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669,166,393 | 20,074,992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577,867,504 | 17,336,025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91,298,889  | 2,738,967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| 41,591,520  | 1,247,746 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41,591,520  | 1,247,746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49,707,369  | 1,491,221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| 9,813,737   | 294,412    |
|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  | 3,563,107   | 106,893   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  | 14,031,504  | 420,945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| 3,693,516   | 110,805    |
|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     | 3,238,377   | 97,151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| 1,010,000   | 30,300 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| 1,594,839   | 47,845     |
| 농공단지특별회계         | 593,850     | 17,816     |
|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| 2,511,354   | 75,341    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| 2,435,323   | 73,060     |
|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    | 150,000     | 4,500 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| 7,071,762   | 212,153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322,79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인건비(보수)
2.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

제 6 조 총액인건비제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